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정의) ① 법 제2조제6호마</u> <u>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기</u> <u>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1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</u> <u>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</u> <u>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</u> <u>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</u> <u>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</u> <u>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 <u>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“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</u> <u>말한다.</u> <u>1. 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기술</u> <u>혁신 성과물의 사업화, 실증, 활</u> <u>용, 확산, 고도화 또는 공급망</u> <u>형성에 참여하는 자</u> <u>2.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</u> <u>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</u> <u>(이하 “사업화계정”이라 한다)</u> <u>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</u> <u>규정된 자</u>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저작권법」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

2.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

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,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

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
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

2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

<신 설>

는 재산권

제17조의3(사업화 금융지원) ① 중소

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
2.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
3. 이자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
4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(代支給)에 따른 대위권(代位權)의 행사
5. 경영 및 기술지도
6. 기술거래·사업화 및 이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

③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.

1.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

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

2.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 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

3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

4.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법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및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1. 수수료: 업무 수행에 든 비용 ·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

2. 보증료: 사업화계정의 수입 · 지출 균형 유지,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

제17조의3(계정의 수입 및 지출)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

제17조의4(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) ① 사업화계정-----

기업 기술혁신 계정(이하 “계정”이라 한다)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.

1.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
2.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

<신 설>

3. 계정의 운용수익

4. (생략)

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.

1.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

2. 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
<신 설>

제17조의4(계정의 운용·회계 및 결산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

-.

2. 법 제28조의2제1항-----

-

1. 법 제27조의4제2항-----

-

3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

4. 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사업화계정-----

-----.

1.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와 부대경비

2. 사업화계정-----

3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

제17조의5(사업화계정의 운용·회계 및 결산) ① -----

-- 법 제27조의4제1항----- 사업화계정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
③ ----- 사업화계정---

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.

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신 설>

-----다
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
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주식(출자증권을 포함한다)·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

④ ----- 사업화계정 -----

-----.

⑤ 사업화계정-----
-----.

⑥ 회계연도마다
사업화계정

제17조의6(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)

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른 유
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
의 경우 300억원, 그 외의 경우 50
0억원 이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산
등 양도·위탁자가 실시료를 받
을 권리(이에 대하여 「신탁법」

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을 포함한다)를 양도·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(이하 “납부 의무자”라 한다)를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·위탁자로 본다. 이 경우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적용한다.

<신 설>

제2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중소벤처기업부장관(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17조의7(보증 총액의 한도)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 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.

제2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
-----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-----사업을 수행하는 자,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·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-----

-----.

1. ~ 4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~ 7. (생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<u>4의3. 법 제27조의3에 따른 사업 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</u> <u>4의4.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 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
---	--